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67

발 의 년 월 일 :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 김규남, 김재진, 문성호, 박춘선, 신동원, 유정인, 이병윤, 이종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의원(11명)

1. 제안이유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 · 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있어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던 만큼 향후 통행료 지원대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규정함(안 제6조제11호 신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유효한 「다둥이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혼잡통행료의 감면)제11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세입이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혼잡통행료의 감면)제11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세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서울시 도시교통실 담당부서 문의 결과 현재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통계가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 계 분 석 관	김 지 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